



국민건강보험공단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'13년도 요양기관 개인사업자 국세청 소득신고 관련 업무협조 요청

1.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업무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
2. 우리 공단은 「소득세법」 및 「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요양기관(의료급여기관)에 지급한 의료급여비용 관련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.

3. 이에 따라, 2013년도 원천징수대상 과세자료 중 일부 보완 게시중인 개인사업소득자 지급명세서 국세청 홈텍스 자료확인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, 귀 협회 관할 회원에게 2014.5.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조치방법

가. 이미 소득신고를 완료한 경우 홈텍스 자료보정여부 확인

1) 국세청 홈텍스에서 의료급여비용 소득자료가 보이지 않은 경우

☞ 반드시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제공한 연간지급내역서 및 지급내역통보서를 참고하여 신고

※ '14.5.22일부터 보완된 소득자료 홈텍스 확인가능

2) 국세청 홈텍스 자료가 우리공단 의료급여비용 자료와 상이한 경우

☞ 위 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

나. 아직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

1) 5.22일 이후 보완된 홈텍스 자료와 공단자료를 비교 확인하여 신고

4. 조치방법 사항은 2014.5.31까지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 게시

- 관련사항 전화문의: 02)3270-9467, 9179, 9211. 끝.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

수신자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치과의사협회장, 대한약사회장, 대한치과병원협회장, 대한한방병원협회장, 한국세무사회장



대한약사회장, 대한

과장

김상근

파트장

박기영

부장

전결 14/05/21

변창구

협조자

시행 수탁급여부-5162

(2014.05.21.)

접수

우 121-749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11(염리동)

전화 02-3270-9467
(0099-9467)

전송 02-3275-8041

/ ksens@nhis.or.kr

/ 공개